

투자설명서 변경 정오표

I. 대상 투자신탁

투자신탁명	주요 변경사항
푸르덴셜네오밸류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	-모자구조로 변경: 푸르덴셜네오밸류인덱스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자펀드로 편입 -투자신탁명 변경 푸르덴셜네오밸류인덱스증권 자투자신탁(주식)으로 변경

1. 푸르덴셜네오밸류인덱스증권 투자신탁(주식)

1. 정정사유 :

가. 모자형 투자신탁으로 변경

-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 2) 집합투자계약상의 변경사항 반영

나.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내용의 갱신

2. 정정사항

가. 모자형 투자신탁으로 변경

-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예비투자설명서 표지 -집합투자기구 명칭	푸르덴셜네오밸류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	푸르덴셜네오밸류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예비투자설명서 -머리글	푸르덴셜네오밸류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	푸르덴셜네오밸류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푸르덴셜네오밸류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	푸르덴셜네오밸류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푸르덴셜네오밸류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	푸르덴셜네오밸류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푸르덴셜네오밸류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	푸르덴셜네오밸류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클래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클래스)	푸르덴셜네오밸류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	푸르덴셜네오밸류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푸르덴셜네오밸류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	푸르덴셜네오밸류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계약상의 변경사항 반영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정정전1)	정정후1)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표시	(신설)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정정전2)	정정후2)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09. 11.	(신설)	법시행령제24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정정전3)	정정후3)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정정전4) (신설)	정정후4)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정정전5)	정정후5)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정정전6)	정정후6)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정정전7)	정정후7)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정정전8)	정정후8)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나. 수익구조	정정전9)	정정후9)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정정전10)	정정후10)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 일반위험	정정전11)	정정후11)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정정전12)	정정후12)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정정전13)	정정후13)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2) 자산운용보고서	정정전14)	정정후14)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정정전15)	정정후15)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정전16)	정정후16)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정정전17)	정정후17)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정정전18)	정정후18)

정정전1)

명 칭	푸르덴셜네오밸류인텍스증권투자신탁(주식) (15297)		
종류 (클래스)	종류A	종류 C	종류 C-e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15300	15301	15302

정정후1)

명 칭	푸르덴셜네오밸류인텍스증권 자투자신탁(주식) (15297)		
종류 (클래스)	종류A	종류 C	종류 C-e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15300	15301	15302

- 정정신고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에 이 투자신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됩니다..

- 변경전 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푸르덴셜네오밸류인텍스증권투자신탁(주식)'이며, 변경 전 발행된 종류형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는 별도의 절차없이 변경된 명칭(푸르덴셜네오밸류인텍스증권 자투자신탁(주식))의 해당 종류형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정전2)

명 칭	푸르덴셜네오밸류인텍스증권투자신탁(주식) (15297)		
종류 (클래스)	종류A	종류 C	종류 C-e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15300	15301	15302

정정후2)

명 칭	푸르덴셜네오밸류인텍스증권 자투자신탁(주식) (15297)		
-----	---------------------------------	--	--

종류 (클래스)	종류A	종류 C	종류 C-e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15300	15301	15302

- 정정신고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에 이 투자신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됩니다.
- 변경 전 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푸르덴셜네오밸류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이며, 변경 전 발행된 종류형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는 별도의 절차없이 변경된 명칭(푸르덴셜네오밸류인덱스증권 자투자신탁(주식))의 해당 종류형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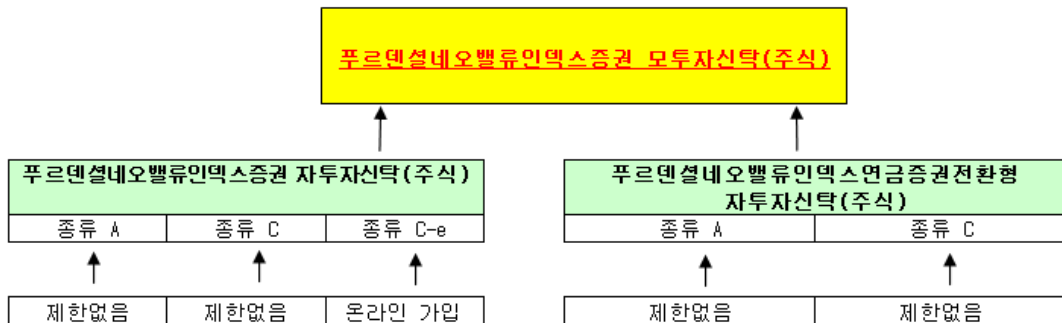
정정 전3)

- 투자신탁,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푸르덴셜네오밸류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		
종류 A	종류 C	종류 C-e
제한없음	제한없음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

정정 후3)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정정 전4)

(신설)

정정 후4)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	푸르덴셜네오밸류인덱스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푸르덴셜네오밸류인덱스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신탁재산의 90% 이상 투자

푸르덴셜네오밸류인덱스연금 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	신탁재산의 90% 이상 투자
----------------------------------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요내용
모투자신탁명	푸르덴셜네오밸류인덱스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주요 투자대상	신탁재산의 70%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고 국내에서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에 투자합니다.
주요 투자전략	주로 기업의 내재가치를 기준으로 구성비중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진 'MKF네오밸류인덱스'의 수익률에 연동되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이익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투자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등

정정전5)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주로 기업의 내재가치를 기준으로 구성비중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진 'MKF네오밸류인덱스'의 수익률에 연동되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이익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정정후5)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주로 기업의 내재가치를 기준으로 구성비중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진 'MKF네오밸류인덱스'의 수익률에 연동되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이익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정정전6)

투자대상	투자한도	투자대상자산 세부설명
① 주 식	- 국내에서 발행되고 국내에서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에 60%이상	- 주식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을 말함

② 채 권	- 40%이하	- 채권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을 말함.
③ 자산유동화증권	- 40%이하	- 자산유동화증권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말함
④ 어 음	- 40%이하	- 어음은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를 말함
⑤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10%이하	-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을 말함
⑥ 집합투자증권등	- 40%이하	- 집합투자증권등이란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을 말함
⑦ 환매조건부매도	- 보유 증권총액의 50%이하	- 환매조건부매도란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⑧ 증권의 대여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	
⑨ 증권의 차입	- 상기의 ①주식,②채권,③자산유동화증권,④어음, ⑥집합투자증권등의 차입은 20%이하	
기 타	- 법시행령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단기대출(법시행령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 2.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이내인 상품에 한함)
--	---

*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주로 헷지 목적으로 투자하나 상황에 따라 헷지 외의 목적으로 투자(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10%이내 한도) 할 수 있습니다.

정정후6)

투자대상	투자한도	투자대상자산 세부설명
①모투자신탁 수익증권	- 90%이상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은 푸르덴셜네오밸류인덱스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말함
②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예치	- 10%이하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단기대출 : 법시행령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 - 금융기관 예치 : 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기 타	- 법시행령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집합투자업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주식관련사채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푸르덴셜네오밸류인덱스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한도	투자대상자산 세부설명
①주 식	- 국내에서 발행되고 국내에서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에 70%이상	- 주식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 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을 말함
②채 권	- 30%이하	- 채권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을 말함.
③자산유동화증권	- 30%이하	- 자산유동화증권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말함
④어 음	- 30%이하	- 어음은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를 말함
⑤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 파생상품 매매에따른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이하	-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을 말함
⑥집합투자증권등	- 30%이하	- 집합투자증권등이란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을 말함
⑦환매조건부매도	- 보유 증권 총액의 50%이하	- 환매조건부매도란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⑧증권의 대여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	
⑨증권의 차입	- 상기의 ①주식,②채권,③자산유동화증권,④어음, ⑥집합투자증권등 의 차입은 20%이하	
기 타	- 법시행령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단기대출(법시행령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이내의 금전의 대여) 2.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이내인 상품에 한함)	

*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주로 헷지 목적으로 투자하나 상황에 따라 헷지

의의 목적으로 투자(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내 한도) 할 수 있습니다.

정정전7)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내 용
①이해관계 인과의 거래	<p>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p> <p>가.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p> <p>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p>
②동일종목 증권	<p>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p>

	<p>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일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p>
③집합투자증권	<p>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p> <p>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p> <p>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각각 납부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5 및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④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p>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⑤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p>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⑥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p>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⑦계열회사 발행 증권	<p>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p>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한도 및 투자제한의 예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가.투자대상의 ①,②,③,④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의 ①,②,③,④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의 가.투자대상의 ⑤,⑥,⑦,⑧,⑨의 투자한도 및 상기의 나.투자제한의 ②,③,④,⑤,⑥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상기의 나.투자제한의 ②의 본문,③의 가.⑤,⑥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정정후7)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내 용
①이해관계인과의 거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동일종목 증권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③계열회사 발행 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한도 및 투자제한의 예외>

<p>-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가.투자대상의 ①,②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의 ①,②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p>-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의 나.투자제한의 ②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p>- 상기의 나.투자제한의 ②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p>
--

※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푸르덴셜네오밸류인텍스증권 모투자신탁(주식)]

구 분	내 용
-----	-----

<p>①이해관계인과의 거래</p>	<p>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p> <p>가.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p> <p>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p>
<p>②동일종목 증권</p>	<p>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p>

	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③집합투자증권	<p>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p> <p>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p> <p>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각각 납부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5 및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④동일법인발행지분증권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⑤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⑥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⑦계열회사 발행 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한도 및 투자제한의 예외> - 모투자신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가.투자대상의 ①,②,③,④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6.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7.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8.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9.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10.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의 ①,②,③,④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의 가.투자대상의 ⑤,⑥,⑦, ⑧,⑨의 투자한도 및 상기의 나.투자제한의 ②,③,④,⑤,⑥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상기의 나.투자제한의 ②의 본문,③의 가,⑤,⑥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정정전8)

가. 비교지수 추종전략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MKF네오밸류인덱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추종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기본적으로 비교지수와 추적오차(Tracking Error)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Passive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운용합니다. 즉, KOSPI 또는 KOSPI200 등과 같이 시가총액식으로 산출되는 기존의 시장 대표지수를 비교지수로 하여 Passive 전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MKF네오밸류인덱스의 개요]

- 시가총액이 아닌 기업의 내재가치(펀더멘탈)을 기준으로 종목 및 비중을 구성하여 산출하는 지수
- 내재가치 비중 방식 지수의 차별성(기존 시가총액식 지수 대비)
 - √주가는 단기적으로 적정가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음
 - √시가총액식 지수는 적정가 보다 높은 종목의 비중은 많이, 낮은 종목은 적게 반영하는 반면
 - √내재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MKF네오밸류인덱스는 고평가 종목 비중은 줄이고, 저평가 종목 비중은 늘리는 효과가 있음

● 투자 유니버스 구성시, 최근 이익 모멘텀이 나쁜 일부 기업에 대해 투자 유니버스에서 제외

나. 추가 수익전략

제한된 범위내에서 내부 리서치에 근거한 소폭의 투자비중 또는 스타일/섹터비중 조절 등을 통하여 추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예상 추적오차 범위

추적오차율(투자신탁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과 투자신탁이 목표로 하는 비교지수 변동률의 차이)은 1년 기준으로 +/-5% 이내로 예상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추적오차는 구성지수 종목의 가격 급변동, 설정 및 환매대금의 급변동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서 예상하고 있는 추적오차의 범위를 일부 초과할 수 있습니다.

라. 포트폴리오 재조정 주기 및 사유

① 포트폴리오 정기 조정 : MKF네오밸류인덱스의 정기적 비중 재조정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

- 연간 2회 : 매년 5월 및 11월(재조정시기는 지수 산출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 1회 : 매월 투자비중 한도(10% 또는 시가비중)를 초과한 종목이 있을 경우, 한도 이내로 지수 내 비중 조정

② 포트폴리오 수시 조정

- MKF네오밸류인덱스 구성종목의 부도, 합병, 분할 등의 사유발생시

- MKF네오밸류인덱스 구성종목의 권리행사에 따른 증자, 감자 사유 발생시

※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정후8)

이 투자신탁은 푸르덴셜네오밸류인덱스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나머지 자산은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등의 자산으로 운용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가. 비교지수 추종전략

모투자신탁은 비교지수(MKF네오밸류인덱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추종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기본적으로 비교지수와 추적오차(Tracking Error)를 최소화할 수 있

도록 Passive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운용합니다. 즉, KOSPI 또는 KOSPI200 등과 같이 시가총액식으로 산출되는 기존의 시장 대표지수를 비교지수로 하여 Passive 전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MKF네오밸류인덱스의 개요]

- 시가총액이 아닌 기업의 내재가치(펀더멘탈)을 기준으로 종목 및 비중을 구성하여 산출하는 지수
- 내재가치 비중 방식 지수의 차별성(기존 시가총액식 지수 대비)
 - √주는 단기적으로 적정가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음
 - √시가총액식 지수는 적정가 보다 높은 종목의 비중은 많이, 낮은 종목은 적게 반영하는 반면
 - √내재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MKF네오밸류인덱스는 고평가 종목 비중은 줄이고, 저평가 종목 비중은 늘리는 효과가 있음
- 투자 유니버스 구성시, 최근 이익 모멘텀이 나쁜 일부 기업에 대해 투자 유니버스에서 제외

나. 추가 수익전략

제한된 범위내에서 내부 리서치에 근거한 소폭의 투자비중 또는 스타일/섹터비중 조절 등을 통하여 추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예상 추적오차 범위

추적오차율(투자신탁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과 투자신탁이 목표로 하는 비교지수 변동률의 차이)은 1년 기준으로 +/-5% 이내로 예상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추적오차는 구성지수 종목의 가격 급변동, 설정 및 환매대금의 급변동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서 예상하고 있는 추적오차의 범위를 일부 초과할 수 있습니다.

라. 포트폴리오 재조정 주기 및 사유

① 포트폴리오 정기 조정 : MKF네오밸류인덱스의 정기적 비중 재조정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

- 연간 2회 : 매년 5월 및 11월(재조정시기는 지수 산출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 1회 : 매월 투자비중 한도(10% 또는 시가비중)를 초과한 종목이 있을 경우, 한도 이내로 지수 내 비중 조정

② 포트폴리오 수시 조정

- MKF네오밸류인텍스 구성종목의 부도, 합병, 분할 등의 사유발생시
- MKF네오밸류인텍스 구성종목의 권리행사에 따른 증자, 감자 사유 발생시

※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정전9)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한 국내 주식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주로 결정됩니다.

정정후9)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이** 투자한 국내 주식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주로 결정됩니다.

정정전10)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정정후10)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정전11)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주식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므로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가치도 하락하게 됩니다.
----------	---

정정후11)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식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7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므로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가치도 하락하게 됩니다.

정정전12)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이 아직 제1기가 경과되지 않아 이 투자신탁과 투자전략이 유사한 푸르덴셜인덱스증권투자신탁NH2호(주식-파생형)의 직전회계연도(2007.12.06-2008.12.05)의 기타비용비율(연 0.01%)과 이 투자신탁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MKF네오밸류인덱스 지수서비스 수수료율 : 연 0.05%)의 합계액을 추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는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기타비용 중 지적재산권비용(MKF네오밸류인덱스 지수서비스 수수료율: 연0.05%)은 기간 중 일할 안분반영 됩니다.

정정후12)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이 아직 제1기가 경과되지 않아 이 투자신탁과 투자전략이 유사한 푸르덴셜인덱스증권투자신탁NH2호(주식-파생형)의 직전회계연도(2007.12.06-2008.12.05)의 기타비용비율(연 0.01%)과 이 투자신탁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MKF네오밸류인덱스 지수서비스 수수료율 : 연 0.05%)의 합계액을 추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는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정전13)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정정후13)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정정전14)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3개월마다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정정후14)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3개월마다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정정전15)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정정후15)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 (**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정정전16)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prudentialfund.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정정후16)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prudentialfund.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정정전17)

- 신규로 설정되는 집합투자기구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정정후17)

- 설정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정정전18)

- 신규로 설정되는 집합투자기구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정정후18)

- 설정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내용의 갱신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현황	정정전1)	정정후1)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최초설정일	정정전2)	정정후2)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 신규로 설정되는 집합투자기구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설정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	- 신규로 설정되는 집합	-설정일 이후 6개월이 경과

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투자기구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신규로 설정되는 집합 투자기구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설정일 이후 6개월이 경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2009. 6. 30 현재	내용 갱신 2009. 10. 30 현재

정정전1)

(기준일: 2009년 6월 30일)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경력 및 이력	비고 (운용담당)
			운용중인 다른 집합 투자기구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 기구 규모		
김범희	1961	그룹장	28개	5,043 억	- 연세대대학원 - 현대투자신탁증권 (11년 9 개월) - 푸르덴셜자산운용(9년3개월)	AI그룹

주) 이 투자신탁은 AI그룹이 팀제로 운용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AI그룹장)입니다.

정정후1)

(기준일: 2009년 10월 30일)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경력 및 이력	비고 (운용담당)
			운용중인 다른 집합 투자기구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 기구 규모		
김범희	1961	그룹장	35개	6,761 억	- 연세대대학원 - 현대투자신탁증권 (11년 9 개월) - 푸르덴셜자산운용 (10년)	AI그룹

주) 이 투자신탁은 AI그룹이 팀제로 운용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AI그룹장)입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펀드 수	운용규모
1개	100억

정정전2)

구 분	종류 A	종류 C	종류 C-e
최초설정일	설정예정	설정예정	설정예정

정정후2)

구 분	종류 A	종류 C	종류 C-e
최초설정일	2009.8.19	2009.8.19	2009.8.20